한경대학교 산업체 재직자 과정 설치 및 운영규정

(규정 제 395호) 제정 2019.8.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한경대학교 학칙」제13조의 2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산업체 재직자 과정(이하 “재직자 과정”이라 한다)이란 한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학부·전공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 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과정의 설치) ① 재직자 과정의 모집단위는 본교 학칙 별표 1과 같이 설정하되 신설할 수 있다.

② 재직자과정은 학칙 별표 1에서 정한 야간학과와 통합 운영하는 과정(이하 “혼합반“이라 한다)과 신설된 모집단위로 따로 운영하는 과정(이하 ”별도반“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별도반은 등록생 기준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한다.

③ 재직자과정의 모집단위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과정의 운영) ① 재직자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본교 학칙 별표 1에 규정한 학과를 운영학과로 지정하여야 하며, 운영학과 학과장이 재직자과정의 학사운영을 총괄한다.

② 재직자과정의 학사운영은 한경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하되, 운영학과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재직자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재직자과정 운영위원회) ① 재직자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직자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심의한다.

1. 재직자과정 학과 설치에 관한 사항
2. 재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재직자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.

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칙 <규정 제395호, 2019.8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과정과 재적 중인 학생은 본교 학칙(규정 제384호)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따른다.

[별표 1]

재직자과정 모집단위

구분	모집단위명	운영학과
혼합반	건설환경공학부-토목공학전공(야간)	건설환경공학부-토목공학전공
혼합반	식품생명화학공학부-식품생명공학전공(야간)	식품생명화학공학부-식품생명공학전공
별도반	웰니스산업융합학부-융합레포츠전공(야간)	웰니스산업융합학부-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
별도반	법경영학부-레저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(야간)	법경영학부-경영학전공
별도반	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-글로벌물류전공(야간)	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-공공행정전공
별도반	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-노동복지전공(야간)	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-공공행정전공